

강의료 및 제 수당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강의료 및 제 수당 지급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1.)

제2조 (강의의 구분) 본교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국내외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3. 전임교원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4.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제3조 (강의료 지급 기준) 강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3. 1)

1. 강의시간 단위는 보통강의는 **5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 수업은 원칙으로 45분을 1시간 수업으로 한다.)
2. 본교 행사(체육대회, M.T, 실습 등) 및 본교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 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
3. 출장 및 휴강 시 강의료는 지급하되, 기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보강을 필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시간 미달)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 수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강의료 정액) 본교의 시간당 강의료 지급 정액은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6조 (특강료) 초빙강사(국내·외)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 지급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강사(국내·외) 특강료 및 외국인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특강료를 증액 지불할 수 있다.
2.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본교 겸임교수 임용규정에 따른다.
3. 외국인 강사의 강의료는 고용계약서에 따른다.

제7조 (강의료 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료 지급을 별도로 한다.

1.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인 경우**, 강의료 정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18.3.1.)
(단, 실습 및 토요일 수업 과목은 제외한다.)

제8조 (강의료 지급 기준일) 강의료 지급일은 4주 단위가 지난 첫 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